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0.1.29.)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문위 구성 근거 별도 규정(안 제21조의3 신설)

자치분권위원회의 이양비용 심의 절차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를 담보할 필요가 있어 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별도로 정하고 위원 구성 시 기재부·행안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 제도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이양비용 산정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법제45조제2의2호의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법제46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단,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법제45조제2호의2의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3(이양비용 산정 등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u> <u>① 위원회는 법제45조제2의2호의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법제46조제8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한다.</u> <u>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u> <u>2.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 3명, 지방행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단, 행정안전부에서 추천하는 사람에는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u>

협의회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및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동 추천한 사람 2명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호의2의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 평가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그밖에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325